인사·보상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인사·보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5.7>

제2조(적용범위)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 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구성)
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26.7.23>
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
④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⑤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⑥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. <개정 2023.10.25>
1. 회사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 보수 한도
2. 등기 및 미등기임원 등 경영진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3. <삭제 2021.5.7>
4. 사내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[신설 2021.5.7]
5. 대표이사의 평가 및 보상 [신설 2021.5.7]
6. 사내이사 후보 심사 [신설 2021.5.7]
7. 위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대표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[신설 2021.5.7]

제5조(대표이사에 대한 평가)

① 위원회는 매년 전사 및 대표이사의 핵심성과지표(KPI)를 심의, 확정하여, 이를 연 1 회 평가하고 보상 수준을 결정한다.
② 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직전년도 말일부터 45 일전까지 재임기간 중의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연임 여부를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.
[본조 신설 2021.5.7]

제6조(이사 후보 심사)
회사가 독립이사 아닌 이사 후보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후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
제출하여야 하고, 위원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, 이를 심사 후 그 결과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[본조 신설 2021.5.7] <개정 2026.7.23>

제7조(회의)
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② 정기위원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 전에 개최한다.
③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위원장은 처음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심의한 내용의 결과를 보고한다.

제8조(의사록)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계인의 출석 등)
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, 인사 관련 담당 임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 지원)
이사회사무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 수집 등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

한 전반적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.

부칙(2020년 3월 20일 시행)

이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년 5월 7일 시행)

이 규정은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년 10월 25일 시행)

이 규정은 2023 년 10 월 25 일부터 시행하며, 이 규정 시행 전에 제 4 조에 따라 심의, 의결한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의결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2026년 7월 23일 시행)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